

제2626호
2019. 1. 9.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2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9-3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2

● 공 고

제2019-13호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4
 제2019-1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2019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6
 제2019-15호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22
 제2019-16호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공고 23
 제2019-17호 :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고 25
 제2019-2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2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 3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 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73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4-4	2019.01.09.	건물철거
2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73-1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34-20	2019.01.09.	건물철거
3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75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34-3	2019.01.09.	건물말소
4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75-1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34-11	2019.01.09.	건물철거
5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75-2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34-1	2019.01.09.	건물철거
6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9길 21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9	2019.01.09.	건물철거
7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9길 25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8-15	2019.01.09.	건물철거
8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9길 26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60-4	2019.01.09.	건물철거
9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9길 27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8-3 외 1필지	2019.01.09.	건물철거
1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0길 33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8-52	2019.01.09.	건물철거
1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0길 35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8-13	2019.01.09.	건물철거
1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0길 37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8-26	2019.01.09.	건물철거
1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0길 37-1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8-26	2019.01.09.	건물철거
1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0길 39-6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34-20	2019.01.09.	건물철거
1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0길 39-8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33	2019.01.09.	건물철거
1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0길 39-20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32	2019.01.09.	건물철거
1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0길 39-34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8-44	2019.01.09.	건물철거
1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0길 43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5-1	2019.01.09.	건물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3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9. 1. 16. ~ 2018. 1. 31.

3. 공 고 대 상

- 자동차등록번호 : 06루08**외 3대
- 소 유 자 명 : 비*****코리아(주)외 3대
- 운행정지 명령일자 : 2018. 12. 1. ~ 12. 31.
- 운행정지 사유 : 소유자 요청

4.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2-3396-62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정지 자동차 현황

연 번	운행정지상 태	자동차등록번 호	소유자명	소유자등록번호	사용본거지주소
1	등록	06루08**	비*****코리아(주)	110111-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	등록	27소07**	비*****코리아 (주)	110111-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	등록	39하15**	S***** (주)	130111-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	등록	43다32**	고*민	690301-1*****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4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2019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신청대상

- 공무원으로「공무원연금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제외)

2. 신청 제외 대상

- 가. 징계처분장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다.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3. 신청기간

가. 정기 명예퇴직

구 분	신 청 기 간	명예퇴직일
6급 이상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 말일
7급 이하	매월 10일까지	해당월 말일

나. 수시 명예퇴직

- 직제와 정원의 개폐, 질병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수시 신청 가능

4. 신청절차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부서장은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소정의 신청서류와 함께 구청장(행정지원과)에게 제출
 ※ 인사위원회 심사는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다음 달에 심사

5. 지급대상자 결정

가. 명예퇴직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해당자를 우선 고려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7조
- ① 상위계급의 공무원
 - ②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 ③ 해당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 ④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나. 서울특별시중구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여부 결정

※ 소속부서장은 명예퇴직 제외사유 발생 시 자체 없이 행정지원과에 통보

다. 예산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6.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및 환수대상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정년잔여기간	산정기준
1년이상 ~ 5년이내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5년초과 ~ 10년이내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 [60 + (정년잔여월수-60)/20]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60 + (정년잔여월수-60)/2]
10년초과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재직 중에「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7. 행정사항

- 가. 소속 부서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작성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 추천하여서는 아니되며, 명예퇴직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및「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참조

【붙임 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① 소 속	② 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③ 직 급	(호봉)
④ 성명	한 글	⑤ 생 년 월 일		
	한 자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자 택)		⑧근 속 기 간	년 월	⑨정 년 일 년 월 일
⑩ 정 년 구 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⑪ 수당 청구액	
⑫ 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	년 월		⑬ 산 출 내 역	
⑭ 계 좌 번 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 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 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 3. 명예퇴직원 1부

2019. . .

신 청 인 (인)

⑭ 확 인 인사담당 (인) 연금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9. . .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귀하

주) 사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작 성 요 령

1. ②는 해당란(□)에 √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기재함
2. ③은 정확한 직급 기재
3. ⑧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공고된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4. ⑩은 해당란에 √ 표시함
5. ⑫는 공고된 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단위이하 잔여기간이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6. ⑧,⑨,⑩,⑪,⑫,⑬은 인사 또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7. ⑬은 ⑩의 산출근거를 기재함
8. ⑭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하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붙임 3】

명예퇴직대상자 요건심사서

대 상 자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확인자 날인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자	"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간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기타 명예퇴직제도 취지상 부적격자	"				
<p style="text-align: center;">조사 및 확인자</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월 일</p> <table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25%;">부서(기관)명</td> <td style="width: 25%;">직위</td> <td style="width: 25%;">직급 (소속부서장)</td> <td style="width: 25%;">성명 (인)</td> </tr> </table>			부서(기관)명	직위	직급 (소속부서장)	성명 (인)
부서(기관)명	직위	직급 (소속부서장)	성명 (인)			

【붙임 5】

퇴직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19년 월 일부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퇴직 후에도 알게 된 제 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를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19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	성명	(인)
서약집행자 : 소속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특별승진 심사대상자인 경우 제출]

공 적 조 서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급 (직위)			
근속기간		담당업무			
가족사항					
학력		공무원 경력		포상 및 징계기록	
년 월	이 력	년월일	이 력	년월일	내 용
공 적 요 지(100자 내외)					
조 사 자(소속부서장)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 ○○○○○ 국장					

공 적 사 항

관 련 법 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으로 할 수 있다.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 가. 3급 이상: 2년 이상 나. 4급: 3년 이상 다. 5급: 4년 이상
- 라. 6급: 3년 6개월 이상 마. 7급 및 8급 : 2년 이상 바. 9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삭제 <1996. 3. 23.>

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줄일 수 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④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5조(명예퇴직수당·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

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제17조의3은 제외한다)의 월봉급액(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를 말한다)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1.6.]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	퇴직 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left[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 - 60}{2}\right]$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 나.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5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투표법」제5조와 같은 법 제9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 외국인등록표상 영주 거주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기준일 2018. 12. 31.)

구 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총 수	112,505 명
주 민 수	111,457 명
외국인 수	1,048 명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6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중구의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 외국인등록표상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된 19세 이상 외국인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중구청장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시 받아야 할 서명인 수
중 구 청 장		112,424	16,864
등 명	소 공 등	1,765	265
	회 현 등	5,105	766
	명 등	2,673	401
	필 등	3,654	549
	장 충 등	4,291	644
	광 희 등	4,657	699
	을 지 로 등	1,659	249
	신 당 등	7,273	1,091
	다 산 등	13,137	1,125
	약 수 등	15,486	1,125
	청 구 등	12,831	1,125
	신당 제5동	8,278	1,125
	동 화 등	9,426	1,125
	황 학 등	11,277	1,125
	중 림 등	10,912	1,125

▣ 중구의회 지역구의원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시 받아야 할 서명인 수
중구 가선거구		28,939	5,788
동명	소 공 동	1,765	290
	명 동	2,673	290
	광 회 동	4,657	290
	을 지 로 동	1,659	290
	신 당 동	7,273	290
	중 림 동	10,912	290
중구 나선거구		28,981	5,797
동명	신당 제5동	8,278	290
	동 화 동	9,426	290
	황 학 동	11,277	290
중구 다선거구		26,187	5,238
동명	회 현 동	5,105	262
	필 동	3,654	262
	장 총 동	4,291	262
	다 산 동	13,137	262
중구 라선거구		28,317	5,664
동명	약 수 동	15,486	284
	청 구 동	12,831	284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7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고

「지방자치법」제1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주민총수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 외국인등록표상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자 총수

(기준일 2018. 12. 31.)

구 분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자 총수
총 수	112,424 명
주 민 수	111,457 명
외국인 수	967 명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2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 지원 운영에 관한 구체적 운영기준 마련
- 지원대상자 구체적 명시, 세부 지원기준 및 방법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지원대상자 (안 제2조)
 - 지원대상자 구체적 명시
-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지급, 지원방법 (안 제3조~제5조)
 -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 지원의 중지 및 환수, 지원대상자 관리, 기타(안 제6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중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전화 : 3396-5366, FAX : 3396-8730, E-mail : js903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조례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만65세 이상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및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차상위 장애인·차상위자활·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2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수준의 범위, 지원시기 및 구체적인 지원액 등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이 도래하기 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을 미리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및 지급) ①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③ 관할 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매월 지정된 기한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송부하여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지급할 때는 중구가 발행하는 전자적, 자기적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그 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제1항(급여의 중지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준용
-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관할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신청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현황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1.6.7., 2018.12.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11.6.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과 그 유족(개정 2011.6.7)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1.6.7)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시설 이용자(개정 2011.6.7)
6.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개정 2011.6.7., 2018.12.28.>

제3조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개정 2018.12.28.>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